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03

공공행정

01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개선

02 국가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 완화

03 상수원 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

0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거부 규제 개선

05 시설 중심의 발달장애인 주거정책 패러다임 완벽히 전환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개선

수도권·광역시를 포함하여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부서 | 경기도 관광산업과 ☎031-8008-3335

개선배경

- 2024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내 관광기반 확충방안으로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권한이양 발표함(2024.1.4.)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안) 〉

- ■ 지정기준 : (기존) 50만㎡ 이상 → (신설) 5만㎡ 이상 30만㎡ 미만
- ■ 필수시설 : (기존) 3종 이상(편익,숙박, 운동·위락 등) → (신설) 2종 이상 (편익, 관광숙박시설)
- ■ 권한이양 : 시·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 (신설) 시장·군수(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 ■ 혜 택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2024.1.4.)

- 가평군·연천군은 각종 접경, 군사, 상수원 규제 등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음
  * 지역낙후도지수 전국 순위 : 가평 114, 연천 106(전국 167개 시군, '20.10./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내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포함('21.10.19.)

- 가평·연천 지역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라 제외하는 것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배치되는 정책으로
  –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배제가 계속 될 경우 가평, 연천은 회생기회 영구 상실 우려
    * 부처별 배제사업 :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7개부처 통합)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산자부)기회발전특구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정 이유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

■ 제정/시행 : '22.6.10.제정 / '23.1.1. 시행

■ 주요 내용 : 국가 등의 책무 규정, 행재정적 지원 및 규제의 특례 우선 적용

☞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되도록 개선 건의하여 가평군과 연천군을 포함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적용 가능

* (문체부 신설 안) 수도권 · 광역시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 (개선안) 인구감소지역 전체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 ·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4. 10. 22.〉 ※ 이외 관련 조항 생략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려던 것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개선을 건의하여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해짐

추진과정

- ('24.2.22.) **인구소멸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관련 개선 건의(道)**
- ('24.2.22.)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관련 개선 건의(道→문체부)**
- ('24.2.22.) 공동 대응을 위한 건의 자료 공유(道→인천광역시)
- ('24.3.27.)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 행안부 장관 주재 건의(道→행정안전부)
- ('24.3.29.)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안 점검회의 문체부-시도 국장급
- ('24.7.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문체부→道)
- ('24.9.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25.4.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시행**

개선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생활인구* 증대 및 관광 활성화
  * 통근 · 통학 ·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국가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 완화

사유재산에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m 범위 밖의 주거·상업·공업 지역 건축규제를 해제

추진부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031-8008-4772

개선배경

- **(문화유산 주변 규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외곽 규제 조정 필요성 증대**
  - 도내 구도심 중심 재개발 · 재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 지속발생
  - 2008년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규제 범위 조정 전무
    *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도지정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
  - 경기도는 특히 타시도대비 개발수요와 인구증가율이 큰 지역임에도 지자체별 개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범위 설정으로 광역자치단체간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발생

- **(조례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도시지역(주거 · 상업 · 공업)지역에서의 10층 이상 건축물 건축에 대한 문화유산 영향검토 규제 완화를 위해 국가유산청과의 지속적 협의 결과 경기도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200~500m, 도지정문화유산 외곽 200~300m에서의 건축행위 규제 완화
  -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현행)
  - 규제 : 도로 · 시설물, 건축물, 땅깍기, 흙쌓기 등 행위 시 경기도유산위원회 심의 의무

개선내용

- 시 ·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개정전 조례 제5조1항에서 지역범위를 국가유산과 도지정유산 별로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500m까지 범위를 정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정한 지역범위를 초과한 외곽지역까지 10층이상 건축 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제함.(경기도유산위원회 심의)
  - 국가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①국가지정유산은 200~500m까지, ②도지정유산은 200~300m까지 10층이상 건축 시 불필요한 규제를 받아옴

- 국가유산청 협의와 조례개정을 통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외곽 건축규제 해제
  - 도시개발 수요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도시지역(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의 10층 이상 건축 시 규제 해제('24.7.18)

도시지역 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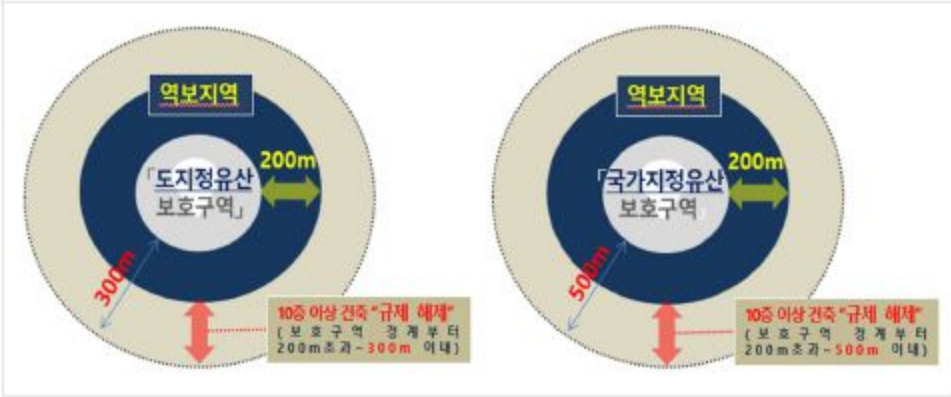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곽(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 초과~500m 이내)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도시지역(주거 · 상업 · 공업)의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범위를 국가유산 외곽 200m로 적용함으로써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 완화

추진과정

- ('15.12.22.)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 건의
- ('22.06.16.)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 재지정 협의요청
- ('23.01.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 관련 국가유산청 방문 협의
- ('23.01.1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곽 규제 조항 삭제(주 · 상 · 공 지역에서 10층 이상 건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장 조항 폐지)협의
- ('24.02.22.)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국가유산청 방문 협의
- ('24.04.17.)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사적분과) 심의 → 원안가결
- ('24.07.18.)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 ('24.07.18.~) 고양멱절산유적 등 규제해제 고시(9건)

개선효과

- 도민 사유재산권 보호 및 국가유산의 합리적 보존 기대
  (도심지 내 국가유산 204개소 주변 약 24㎢ 규제범위 축소/여의도 면적의 5.3배)

구 분	규제해제 현황		
	관련 국가유산(개)	해제면적(㎢)	해제필지 수(개)
소계	203	24	50,401
국가지정유산	64	12.7	28,907
도지정유산	139	11.3	21,134

- 도민불편해소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실효성 제고
  (심의제외로 건축허가기간 단축)

구 분	현 행		규제 해제 후
소 요 기 간	3개월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2개월) + 건축허가(1개월)	⇒	1개월 건축허가(1개월)

- 규제범위 축소로, 수혜지역에서 이루어진 기 행위허가에 대한 착수 · 완료 · 변경허가 의무 제외

〈기존 고시문과 비교〉

〈경기도-국가유산청 협의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규제해제 예시〉
- 경기도 기념물 제195호 고양멱절산유적 -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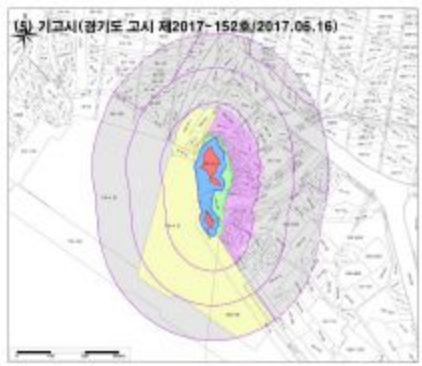

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
200m~300m구간 건축규제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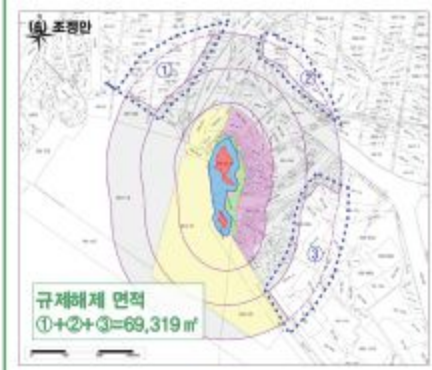

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
200m~300m구간 중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의 경우 규제해제

☞ 도민 사유재산권 보호 및 문화유산의 합리적 보존 기대 가능

사례 '고양멱절산유적'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후('24.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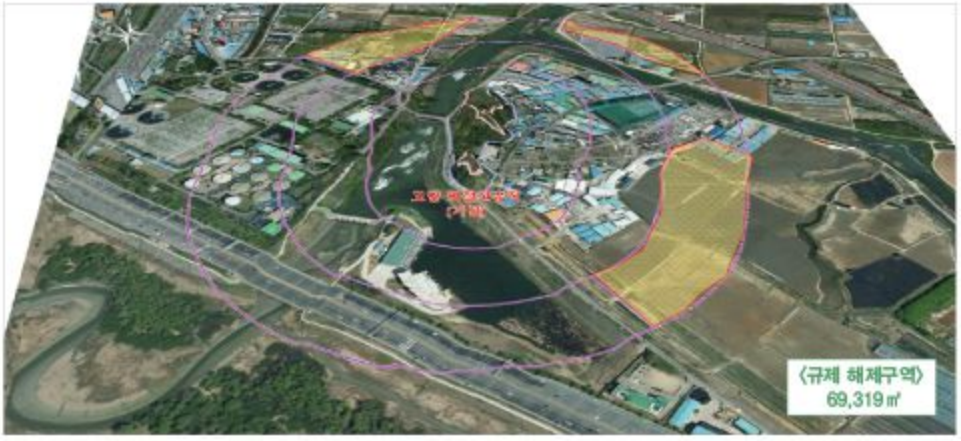

참조 GTV 방송



AI국과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국 단위 조직 신설을 담은 민선 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롭고 중요한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 이번 조직개편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허가 기간이 석 달에서 한 달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 규제해제 관련 GTV 뉴스, '24.6.28.〉

[참조]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_m.do?number=20240628073816373 1C048&s_code=daily&page=15&SchYear=&SchMonth=

주요성과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수립 및 고시(9건)

*(경기도고시 제2024-247호, '24.8.23.) 고양멱절산유적, 행주서원지
(경기도고시 제2024-258호, '24.9. 6.) 이천향교, 이천중리삼층석탑
(경기도고시 제2024-273호, '24.9.25.) 구암 한백겸묘, 양근향교, 오산시궐리사, 오산금암리지석묘, 오산외삼미동고인돌

2)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규제 완화 이후 산단과 상생하는 문화유산 행사 개최

- 기업들이 2003년부터 경기도문화유산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증설 등 건축행위에 강한 제약을 받아왔던 규제 완화
- 규제 해제 이후 "문화재를 품은 런치콘서트" 개최('24.9.25.~10.30.) : 규제·지정해제의 대상이었던 정문부 장군묘 주변이 조례 개정 이후 문화유산과 청년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산업단지로 승화



〈규제해제이후 산업단지 내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모습〉



〈의정부 정문부장군묘 주변 규제해제구역〉

[참고] https://m.koreantoday.or.kr/27254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960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sigun_view.do?BS_CODE=S003&number=32352

참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 내용

현 행	개정안
제7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7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특성 ·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범위 밖 ———— ———— ———— ———— ———— ———— 제1항의 범위를 ———— ———— ————.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시장 ·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 · 허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⑥ 시장 · 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가 ·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검토 내용 및 방법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⑤ ———— ———— 제1항 및 제2항 ———— ———— ————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제13조,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을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따라 유연한 규제 적용

추진부서 | 경기도 상하수과 ☎031-8008-6938

개선배경

- 상수원보호구역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 지역임
- 특히, 음식점 규제에 대한 요구는 2017년 의정부 지검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단속 이후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됨
  - 불법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명의 변경을 통해 경미한 처벌을 받으며 불법 행위 지속

☞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음식점 비율,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2024.8.23.) 및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추진(3~9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①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기준의 50% 이하로 방류하는 경우 ('24년 적용 : 양평군 양서 · 국수)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10% 이내 ▶ 음식점 면적 : 100㎡ 이내	※ 주민 의견에 따라 다음 중 선택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10% 이내 ▶ 음식점 면적 : 100㎡ 이내 또는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5% 이내 ▶ 음식점 면적 : 150㎡ 이내
②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기준의 25% 이하로 방류하는 경우 ('24년 적용 : 광주시 분원)	
〈신설〉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10% 이내 ▶ 음식점 면적 : 150㎡ 이내
③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고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수원보호구역 외로 방류 (하남시)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20% 이내 ▶ 음식점 면적 : 100㎡ 이내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20% 이내 ▶ 음식점 면적 : 150㎡ 이내

- '24년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 · 국수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결과
  -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장 : 방류수 법정기준의 25% 이하 유지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10%로 확대(기존 5%), 음식점 면적 : 150㎡ 로 확대(기존100㎡)
  - 양평군 양서 · 국수 공공하수처리장 : 방류수 법정기준의 50% 이하 유지
    - ■음식점 비율 : 총 호수의 10%로 확대(기존 5%), 음식점 면적 : 100㎡ 유지(주민 의견 반영)

추진과정

제도개선

- ('23.5.24.)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국무조정실)
  -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비율 · 면적 확대, 용도변경 절차개선** 등 의제 협의
- ('23.6.22.)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환경부)
  - **음식점 총 호수 완화 등의 필요성 공감.** 다만, **수질 영향 등을 연계**하여 제도 개선 검토
- ('23.8.3.)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비율 및 면적 확대 방안 협의** 등
  - 서울 · 인천 요구사항 : **물이용부담금 일부 수처리 강화예산 지원**
    - ■道 의견 : **수용불가**(이미 수계기금 활용, 하류 지역 쓰레기 처리 사업 지원)
- ('24.2.21.)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규제개선** 관련 논의 (환경부)
  - 서울 · 인천 요구사항 : 제도개선에 따른 **비점오염저감 방안 수립** 등
    - ■道 의견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
- ('24.8.23.)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수질검사

- ('24.1월)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전년도 수질 사전조사
- ('24.2.5.)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대상지 선정
  - 광주시 분원 · 삼성, 양평군 양서 · 국수
- ('24.3~9월) : 매주 수질검사 실시
  - 검사 결과 : (광주시 분원) 기준 25% 이하, (양평군 양서 · 국수) : 기준 50% 이하 유지
    (광주시 삼성) 기준 50% 초과로 7월부터 수질검사 중단
- ('24.11.20.) 광주시 ·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개선효과

❶ **(지역경제)** 음식점 비율 및 면적 확대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기대**
❷ **(환경적)**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개선된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유도**, 농산물 판로 확대로 **폐기 농산물 감소**
❸ **(행정적)** 음식점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지출감소 및 규제개선으로 인한 **반복 민원 발생을 줄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집행** 가능

언론보도(KBS 뉴스광장, 2024.11.21.)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시료채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거부 규제 개선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법령 마련 통해 행안부로부터
전산자료 제공받아 신청안내문 발송 가능

추진부서 | 경기도 청년기회과 ☎031-8008-3439

개선배경

- 경기도는 행안부로부터 분기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우편 발송용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왔는데, 행안부가 갑자기 23년 3분기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안내문 발송이 불가능해짐

- 이로인해 사업내용 및 신청시기 미인지로 신청을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량 발생하면서 불만민원 급증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개선내용

- (19년 ~ 23.2분기) 행안부, 분기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발송용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 (23.6월말) 행안부,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23년 3분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가 유선 회신
- (23.07.04.) 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결 요청
- (23.1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기본소득 관련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며, 주민등록법 제30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도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의결
- (23.11.24.)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23년 4분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24년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가 유선 회신
- (24.01.05.) 도,'청년기본소득은 「청년기본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상 근거 있는 사업임'을 이유로 행안부에 자료 제공 요청
- (24.01.18.) 행안부, '청년기본소득은 조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에 불과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자료 제공 불가 회신

  * 행안부는 「청년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조항에 불과하여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법적근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

- (24.02.05.) 국회의원실(용혜인 : 행안위 위원) 방문
  * 행안부의 전산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24년 청년기본소득 추진 애로사항 설명 및 행안부에 전산자료 제공 요청해 줄 것 건의
- (24.02.29.) 법제처에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법령상 근거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
- (24.06.05.) 법제처, 동 요청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려
- (24.06.24.) 보도자료 배포*
  * 행안부의 전산자료 미제공으로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 증가
- (24.06.25.) 행안부, 보도 설명자료* 배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 자료를 제공할 계획임
- (24.06.25.) 도, 행안부에 추가 질의 및 전산자료 제공 재요청*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민등록법」 제47조 제4항 제1호),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가능 여부
- (24.07.01.) 이상식 국회의원(행안위)이 행안부 장관에게 전산자료 미제공 상황 현안 질의 예정 통보
- (24.07.03.)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관련 회의 추진
  * 행안부 주민과장, 경기도 열린민원실장 · 청년기회과장 · 청년정책팀장 · 담당자 참석
- (24.07.09.)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법령 마련 조건부*로 24년 3분기부터 전산자료 제공 통보
  * 「청년기본법」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
- (24.07.25.) 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건의(→민병덕 국회의원)
- (24.09.02.) 민병덕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완료 및 현재 상임위(정무위원회) 심사 중
- 행안부, 24년 3~4분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 도, 3~4분기 신청안내문 발송 완료(4분기 신청자 모집 중)

〈 쟁점법령 〉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성과 및 개선내용

개선 전

■ 행안부가 19년부터 23년 2분기까지 분기별로 전산자료를 제공하다가 23년 3분기부터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23년 3분기 신청률(신청자수)은 전년동분기 대비 12.4%p(23,236명) 감소하였고, 24년 1~2분기 신청률(신청자수)은 전년동분기 대비 15.8%p(34,477명) 감소하는 등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량 발생함

■ 또한, 22년(주민등록 전산자료 1~4분기 모두 제공) 예산 불용액(58억) 대비 23년(3분기 미제공 및 4분기 지연 제공) 예산 불용액(111억)이 약 2배 증가함

개선 후

■ 경기도는 전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동일한 상황에 놓인 **타 지자체**(경기 고양시 주거인구 변화율 빅테이터 분석, 경기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사업,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 안내 우편물 발송, 서울시 성동구 성년의 날 맞이 축하카드 발송 등)**와 달리 적극적으로 전산자료 제공 거부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성과를 거두었음

■ 24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신청안내문 발송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4년 3분기 신규 신청자수**는 24년 1~2분기(전산자료 미제공으로 신청안내문 미발송) 대비 **18,381명 증가**하였고, **신청률은 7.8%p 상승**하였음

■ 24년 1~2분기 대비 3분기 신규 신청자 수가 18,381명 증가함에 따라 **183억원**(18,381명 x 100만원) **가량의 예산 불용 발생을 방지함**

■ 4분기(신청기간: 10.31.~11.29.)에도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규신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신청률이 90%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명)

구분	1~2분기 평균(i)	3분기 (c)	증감분 (c-i)
대상자(d)	123,065	124,741	1,676
총 신청자 (e=f+g)	97,297	108,359	11,062
신규 신청자(f)	25,924	44,305	18,381
자동 신청자(g)	71,373	64,054	-7,319
신청률 (e/d)	79.1%	86.9%	7.8%p

신구조문대비표

청년기본법 개정전	청년기본법 개정후
〈신 설〉	제25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 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선효과

-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법」 제21조 책무조항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근거로 청년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라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고 이로 인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음

- 이에, 「청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케 하고자 한 것임

-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 사업들도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수월해짐에 따라, 수혜대상자들에게 청년정책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청년기본법 제4조 제5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관련 언론보도 〉


KBS NEW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유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1분기에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 2,521명 가운데 2만 591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행안부는 시범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는 경기도에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줍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청년소득의 사업일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유 거부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물론 대한민국 이래의 주력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부터 정상화…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제공키로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